

서울고등법원 2022. 9. 28 선고 2022나200185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

담당변호사 허경모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갑

변 론 종 결 2022. 8. 24.

판 결 선 고 2022. 9. 28.

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2. 10. 선고 2019가합11442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종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덧붙이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2면 15행의 “2018. 5. 17.”을 “2016. 5. 17.로 고친다”
- 제1심판결 3면 13행 및 5면 16행의 각 “증인”을 “제1심 증인”으로, 3면 13행의 “이 법원”을 “제1심 법원”으로 각 고친다.
- 제1심판결 4면 4행의 “타당하다.”를 “타당하다[오히려 을 5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E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을 뿐 원고는 본 적이 없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(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와 E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, 그 내용에 있듯이 ①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‘피고한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’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도 E은 ‘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나고 J이 전부 처리해서 모른다’라고 일관하여 답변을 한 점, ② 원고의 아들이 첫 질문을 하면서 ‘피고가 선생님께 땅을 샀는데 그때는 서울 사람이 땅을 가지질 못하여서 원고가 돈을 대어 피고의 명의로 땅을 샀다’라고 설명을 하는 등 E이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E은 을 5, 6호증에 대하여도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글씨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E이 원고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).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4면 6행의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동산실명법’이라고 한다)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,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,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,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데,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(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21123 판결,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),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다23313 판결 참조). 』

○ 제1심판결 4면 6행의 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동산실명법’)을 “또한 부동산실명법”이라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이에 대하여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피고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여 1990년 무렵부터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G,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(대법원 1976. 11. 6.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,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.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

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6647 판결 참조).
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아님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
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. 』

2.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
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그 시가
상당액(위 매매대금 상당액)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1억 원을 배상할
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
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(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). 그
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
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.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
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
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
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(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참조).

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
아닌 계약명의신탁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
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권혁중, 판사 이재영, 판사 김경란